

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가하여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.

나. 보상 시기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개인별 보상대상내역, 보상금, 협의기간 등 손실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별도 개별 통지하여 드릴 계획입니다.

## 6. 기타

가. 토지, 지장물건 등의 소유자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서구청 도시개발과 도시관리팀으로 연락 바랍니다.

나. 조서내용이 추후 보상 등 관계법령에 위반한 물건으로 확인될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 됩니다.

다. 열람기간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에는 작성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보상을 실시하게 됩니다.

라.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 안내문은 소유자별로 개별통지하나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 공고로 대신함을 알려드립니다.

2007년 11월 30일

인천광역시서구청장

## 지장물전체집계조사

번호	소재지	지번	물건의 종류	구조 및 구역	수량(㎡,식,주)			실제 이용 상황	소유자			관계인			비고	
					계	면적	면적		성명	주소	성명	주소	성명	주소		성명
1	백석동	22-13	한전주	8627Q 001	1.0											
2	*	14-8	*	8627S 092	1.0											
3	*	22-5	채신주	C-201 1301-25	1.0											
4	*	14-3	*	C-201 1301-25	1.0											
5	*	22-8	수목	매암나무	48.0				김용관	인천 서구 백석동 21-1						
6	*	19-7	채신주	03-9 7-14-20	1.0											
7	*	14-3	수목	은행나무	3.0											
8	*	14-7	채신주	KT 224	1.0											
9	*	22-17	수목	연산홍, 자산홍	480.0				김무용	인천 서구 백석동 22-5						
10	*	19-9	채신주	확인불가	1.0											

## 용지조서

백석지구 소 3-1호선 일위 도로개설공사

순번	소재지	지번	지목	지적 (㎡)	편입면적(㎡)			현황 도로	소유자			관계인			비고 (용지도 번호)
					도로내	도로외	계		면적	성명	주소	지분	성명	주소	
1	백석동	22-13	구	75	75	-	75	46	한강농지 개발조합	김포군 김포읍 사우리 288					
2	백석동	22-22	구	5	5	-	5		한강농지 개발조합	김포군 김포읍 사우리 288					
3	백석동	22-12	구	11	11	-	11	11	한강농지 개발조합	김포군 김포읍 사우리 288					
									김영균	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21번지 1호					
4	백석동	22-14	대	15	15	-	15	8	박영혜	서울 양천구 신정동 282번지27 호 라이프하이츠빌라 기동 102호					
									배진효	부산 서구 동대신동2가 313번지 상익아파트 6동 406호					
									김영균	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21번지 1호					
5	백석동	22-23	대	74	74	-	74	10	박영혜	서울 양천구 신정동 282번지 27 호 라이프하이츠빌라 기동 102호					
									배진효	부산 서구 동대신동2가 313번지 상익아파트 6동 406호					
6	백석동	14-11	구	3	3	-	3		한강농지 개발조합	경기 김포군 김포읍 사우리 288					
7	백석동	14-10	강	126	126	-	126	3	한강농지 개발조합	김포군 김포읍 사우리 288					

순번	소재지	지번	지목	지적 (㎡)	편입면적(㎡)			잔여 면적 (㎡)	원형 도면 포함 면적	소유자			비고 (용지도 번호)
					도로내	도로외	계			성명	주소	지번	
8	백석동	14-6	강	96	96	-	96	30	한강농지 개발조합	김포군 김포읍 사우리 288			
9	백석동	14-7	구	802	802	-	802	309	한강농지 개발조합	경기 김포군 김포읍 사우리 288			
10	백석동	14-9	구	43	43	-	43	31	한강농지 개발조합	경기 김포군 김포읍 사우리 288			
11	백석동	19-7	담	188	188	-	188	18	김무웅	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22-5			
12	백석동	19-11	담	214	214	-	214		김무웅	인천 서구 백석동 22-5			
13	백석동	22-19	도	10	10	-	10	10	이훈자	인천 서구 백석동 22-6			
14	백석동	22-25	도	2	2	-	2	2	이훈자	인천 서구 백석동 22-6			
15	백석동	22-17	대	94	94	-	94	41	김무웅	인천 서구 백석동 22-5			
16	백석동	22-18	대	2	2	-	2		김무웅	인천 서구 백석동 22-5			
17	백석동	22-24	대	14	14	-	14	14	김무웅	인천 서구 백석동 22-5			
18	백석동	19-9	담	125	125	-	125	2	김무웅	인천 서구 백석동 22-5			
19	백석동	19-10	담	1	1	-	1	1	김무웅	인천 서구 백석동 22-5			

순번	소재지	지번	지목	지적 (㎡)	면적(㎡)			현황 도로	소유자			관계인			비고 (용지도 번호)
					도로나 도로외	계	잔여 면적 (㎡)		성명	주소	지번	성명	주소	내용	
20	벽석동	22-20	전	6	6	6	-	6	김우중	인천 서구 벽석동 22-5					
21	벽석동	22-15	전	9	9	9	-	3	김우중	인천 서구 벽석동 22-5					
22	벽석동	22-16	대	2	2	2	-	2	김용민	인천 부평구 신곡동 294-35 우성아파트 106-206					
23	벽석동	22-21	대	3	3	3	-	3	김용민	인천 부평구 신곡동 294-35 우성아파트 106-206					
24	벽석동	19-3	도	78	78	78		48	하옥	인천 서구 벽석동 18-2번지					
25	벽석동	19-6	담	401	401	401	-		김용관	인천광역시 서구 벽석동 21-1		서인천농업 협동조합	인천 서구 기장동 482-4	근저당	
26	벽석동	19-12	담	169	169	169	-		김용관	인천 서구 벽석동 21-1		서인천농업 협동조합	인천 서구 기장동 482-4	근저당	
27	벽석동	14-12	구	82	82	82	-		한강농지 개발조합	경기 김포군 김포읍 사우리 288					

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7-1045호

## 인천광역시 서구 평생교육 조례(안) 입법 예고

인천광역시 서구 평생교육 조례를 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규정 및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07년 11월 30일

### 인천광역시서구청장

1. 조 례 명 : 인천광역시서구평생교육조례(안)

#### 2. 제정취지

-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 기회 확대 및 교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평생교육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만들기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#### 3. 주요내용

- 평생학습협의회
  - 평생교육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원활히 수행하고,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조정
    -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
    -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·운영에 관한 사항
    - 기타 평생교육에 대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
  -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
- 평생학습센터
  - 센터의 기능
    - 평생학습 도시 정책 개발 및 연구에 관한 사항
    -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
    - 평생교육 관련기관·단체 및 시설의 연계체계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

- 평생교육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사업
- 평생교육 특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
-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구청장 또는 평생학습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센터의 운영  
구청장이 운영·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위탁
- 수강료의 징수  
구청장은 센터가 관리·운영하는 시설의 사용자로부터 이용료 또는 수강료(이하 “수강료”라 한다) 등을 징수

※ 제정조례(안) 별첨

#### 4. 의견제출

- 이 조례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07. 12.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【참조 : 교육지원과장, 우편번호 404-701, 주소 :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길 323번지(심곡동 244번지) Fax:(032)560-4099】 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▷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, 반 여부와 그 이유)
- ▷ 성명(단체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- ▷ 기타 참고사항
- 조례(안)에 대한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교육지원과 ☎(032)560-5912 에 문의 바랍니다.

## 인천광역시 서구 평생교육 조례(안)

### □ 주요골자

#### 1. 목 적

「평생교육법」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구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 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·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

#### 2. 평생학습협의회

- 평생교육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원활히 수행하고,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조정
  -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
  -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·운영에 관한 사항
  - 기타 평생교육에 대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
-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구의원 2명 포함
-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

#### 3. 평생학습센터

##### 가. 센터의 기능

- 평생학습 도시 정책 개발 및 연구에 관한 사항
-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
- 평생교육 관련기관·단체 및 시설의 연계체계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
- 평생교육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사업
- 평생교육 특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
-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구청장 또는 평생학습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##### 나. 센터의 운영

구청장이 운영·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위탁

##### 다. 수강료의 징수

구청장은 센터가 관리·운영하는 시설의 사용자로부터 이용료 또는 수강료(이하 "수강료"라 한다) 등을 징수

## 자 치 법 규 제 정 안 요 약 서

자 치 법 규 명	인천광역시 서구 평생교육 조례(안)
제 정 이 유	<p>○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 기회 확대 및 교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평생교육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만들기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</p>
주 요 내 용	<p>○ 총13개 조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제1조~제2조 : 목적, 기본원칙</li> <li>- 제3조~제6조 : 평생학습협회의 설치,기능,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</li> <li>- 제7조~제9조 : 평생학습센터설치,기능,운영에 관한 사항</li> <li>- 제10조 : 수강료 징수 근거</li> <li>- 제11조 : 수료자에 대한 대우</li> <li>- 제12조 : 준용 근거</li> <li>- 제13조 : 시행규칙 근거</li> </ul>
제 정 안	“별 지 참 조”
신·구조문대비표	“해 당 없 음”
관계법령 발췌	“별 지 참 조”
관련사업 계획	“해 당 없 음”
예산수반사항	“해 당 없 음”
기타 참고사항	

##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 호

## 인천광역시 서구 평생교육 조례(안)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평생교육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 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·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기본원칙)**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평생교육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, 배움과 나눔을 실천하는 평생학습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구민이면 누구나, 언제, 어디서나 필요한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평생교육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.

**제3조(평생학습협의회 기능 등)** ①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원활히 수행하고,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인천광역시 서구 평생학습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1.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
2.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·운영에 관한 사항
3. 기타 평생교육에 대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

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구의원 2명을 포함한다.

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.

④ 위원은 평생교육 관계자, 평생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.

⑤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.

⑥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,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.

**제4조(협의회의 운영)**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, 회의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협의회의 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 구청장의 요구에 따라 개최할 수 있다.

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5조(위원의 해촉 등)** ① 구청장은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- 1. 품위손상,장기간의 회의불참 등 위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는데 맞지 않다고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2.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임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3. 위원 본인 의사에 의해 사직한 경우

②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**제6조(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)** 제3조 및 제4조 외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**제7조(평생학습센터 설치)**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구민의 평생교육기회를 확대·제공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평생교육센터(이하 "센터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**제8조(기능)**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.

- 1. 평생학습 도시 정책 개발 및 연구에 관한 사항
- 2.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
- 3. 평생교육 관련기관·단체 및 시설의 연계체계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
- 4. 평생교육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사업
- 5. 평생교육 특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
- 6.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구청장 또는 평생교육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**제9조(운영 등)** ① 센터는 구청장이 운영·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위탁할 수 있다. 위탁시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을 수탁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.

- 1. 교육문화 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
  - 2. 일정한 재정능력을 갖춘 자
-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사업자의 지정 요건과 관련한 세부기준은 구청장이 정한다.
- ③ 제1항에 따른 수탁사업자의 지정절차에 관하여는 「인천광역시서구사무의민간위탁추진 및관리조례」 제5조2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한다.
- ④ 구청장은 센터를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.

**제10조(수강료의 징수 등)** ① 구청장은 센터가 관리·운영하는 시설의 사용자로부터 이용료 또는 수강료(이하 "수강료"라 한다) 등을 징수할수 있다.

- ② 수강료의 징수는 수익자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, 평생 교육 강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일부 강좌의 운영을 무료로 할 수 있다.
- ③ 제2항의 수강료의 금액,징수방법 등은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구청장이 정한다.

**제11조(수료자에 대한 대우)** 구청장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한 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,우수 수료자에 대하여는 표창을 할 수 있다.

**제 12조(준용)**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평생교육법」 및 「인천광역시서구사무의민간 위탁촉진및관리조례」에 따른다.

**제 13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**부 칙**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